

#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구 미 시

#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와 문화자치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민간 중심의 전문 문화예술 기관 설립을 위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재단의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 나.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4조)
- 다.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1조)
- 라.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30조)
- 마.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제36조)
- 바. 그 밖의 사항(안 제37조 ~ 제41조)

## 3. 정관 : 붙임

## 4. 설립개요

- 기관명칭 : (재)구미문화재단
- 설립형태 : 구미시 출연기관 /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위치 : 구미시 송정대로 120
- 설립시기 : 2024. 1월
- 조직구성 : 1센터 1국 4팀 27명
- 주요사업
  - 문화예술활동 창작 보급 지원, 문화매개인력 양성 사업
  -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

# (재)구미문화재단 정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5.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관리
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따른 목적 사업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5명에서 15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명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재단업무 소관 담당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감사는 재단업무 소관 담당과장이 된다.

③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재단의 팀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④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임원의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임명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이 생길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4.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4조(제한사항)** 임원 및 직원은 재단의 사무와 관련된 상업적 거래 및 영리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직제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이사회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서면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17조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1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재 산 및 회 계

제22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 시 시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통재산과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매년 모금된 기부금 내역과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미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재단의 세입·

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 및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5 장 조직 및 정원

**제31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겸직제한) 재단의 상근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4조(공무원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게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위원회 등) 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수당의 지급 등) 제35조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6 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과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된다.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 임원)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이 사 장	김장호	경상북도 구미시	
대표이사	이한석	경상북도 구미시	
이 사	김영철	경상북도 구미시	
	권봉숙	경상북도 구미시	
	김기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용보	경상북도 구미시	
	김현경	경상북도 구미시	
	김희덕	경상북도 구미시	
	박현숙	경상북도 구미시	
	석유민	경상북도 구미시	
	성병호	경상북도 구미시	
	이정섭	경상북도 구미시	
	이정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상근	경상북도 구미시	
	최성철	경상북도 칠곡군	
감 사	박정은	경상북도 구미시	
	유지훈	대구광역시 남구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
김장호	경상북도 구미시	
이한석	경상북도 구미시	
김영철	경상북도 구미시	
권봉숙	경상북도 구미시	
김기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용보	경상북도 구미시	
김현경	경상북도 구미시	
김희덕	경상북도 구미시	
박현숙	경상북도 구미시	
석유민	경상북도 구미시	
성병호	경상북도 구미시	
이정섭	경상북도 구미시	
이정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상근	경상북도 구미시	
최성철	경상북도 칠곡군	
박정은	경상북도 구미시	
유지훈	대구광역시 남구	

<별지 1>

## 기본 재산 목록

(단위 : 원)

종 별 (용도별)	평 가 액	취득원인	비 고
현금 (예치금)	300,000,000	출연금	

## 관계 법령

### □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제·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박 정 은
	팀 장	심 주 희
	담 당 자	신 우 성 (480-6638)